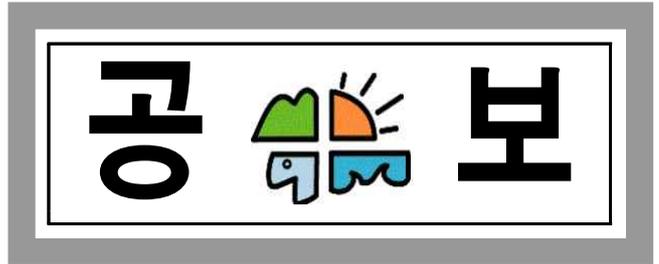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500호 2023년 11월 17일(금)

공고

- 동절기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일시중지 공고 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만리공원)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 3

입법예고

-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3
-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0

발행 : 시 민 소 통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동절기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일시중지 공고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중인 상수도 개인급수공사에 대하여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 및 상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일시 중지하고자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속 초 시 장

1. 중지기간 : 2023. 12. 11. ~ 2024. 3. 1.
2. 중지내용 :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신청 및 공사
3. 중지사유 :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 및 상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
4. 문 의 처 :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맑은물개발팀(☎ 033-639-253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만리공원)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 공 시 송 달 공 고

속초시에서 추진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만리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신청서 공고 및 열람 요청이 있어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 등을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1. 14.

속 초 시 장

다 음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 만리공원)
- 명칭: 도시계획시설(공원: 만리공원)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성명: 속초시

다. 사업시행지 : 속초시 교동 796-4번지 일원

라.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별첨

마. 사업의 내용 : 도시계획시설 (공원:만리공원) 조성사업

바. 공고기간 : 2023. 11. 14. ~ 2023. 11. 29. (15일간)

사.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및 의견서 제출

- 열람기간: 2023. 11. 14. ~ 2023. 11. 29. (15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속초시청 공원녹지과
- 열람내용: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 의견제출: 수용재결신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 타

- 속초시에서 시행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만리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신청서가 강원특별자치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되었음을 알려드리며,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공원녹지과 공원계획팀(☎ 033-639-24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대상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등기상주소	성명	송달주소	종류	
1		798-61	전	661	661	곽○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〇〇, 〇〇 (금호동, 〇〇)	-	-	-	
2	속초시 교동	산247-18 (산247-12)	임	392	392	박○용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영랑로 〇〇, 〇〇 (영랑동, 〇〇)	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압류	보관기간 경과반송
3		산231-48 (산231-2)	임	5,067	5,067	편○현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〇〇(교동)	-	-	-	

□ 수용대상 물건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등기상주소	성명	송달주소	종류	
1	속초시 교동	산247-18	창고	시멘트 벽돌	8.6	박○용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영랑로 〇〇, 〇〇 (영랑동, 〇〇)	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압류	보관기간 경과반송

의 견 서

1. 사업명	도시계획시설(공원: 만리공원) 조성사업	
2.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 . . .</p> <p>의견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강원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하</p>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속초시 공고 제2023- 1067호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부터 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주차질서 유지 및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2028. 12. 31.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 12. 31.까지로 연장(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1) 주소: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교통과
- (2) 문의: 전화(033-639-2068), 팩스(033-633-5006),
이메일(lik0209@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 방문 등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교통과(033-639-2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입법안은 속초시 공보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매년 처리비용 원가 상승 및 낮은 주민부담률로 인하여 시 재정부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여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부담률 현실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폐기물 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별표 3)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 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yb931213@korea.kr

2)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친환경정책과(중앙동)

3) 팩스 : 033-639-2386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친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전화 : 033-639-2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규 격 봉 투 가 격(제10조제2항 관련)

(단위:원)

구분	용량 (L)	2024년			2025년			2026년		
		공급 가격	판매 수수료	판매 가격	공급 가격	판매 수수료	판매 가격	공급 가격	판매 수수료	판매 가격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	1	54	6	60	63	7	70	72	8	80
	3	81	9	90	90	10	100	100	10	110
	5	99	11	110	108	12	120	126	14	140
	10	207	23	230	234	26	260	252	28	280
	20	396	44	440	441	49	490	504	56	560
	30	549	61	610	612	68	680	675	75	750
	50	945	105	1,050	1,053	117	1,170	1,170	130	1,300
	75	1,395	155	1,550	1,548	172	1,720	1,719	191	1,910
P.P포대	50	1,260	140	1,400	1,260	140	1,400	1,260	140	1,400

비고 1. 음식물폐기물용, 재사용봉투의 용량별 봉투가격은 생활폐기물용 봉투가격과 동일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3] 규격봉투가격 (제10조제2항 관련) (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15%;">용량(ℓ)</th> <th style="width: 20%;">봉투판매소 공급가격</th> <th style="width: 50%;">소비자판매가 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td> <td>1</td> <td>45</td> <td>50</td> </tr> <tr> <td>3</td> <td>72</td> <td>80</td> </tr> <tr> <td>5</td> <td>90</td> <td>100</td> </tr> <tr> <td>10</td> <td>180</td> <td>200</td> </tr> <tr> <td>20</td> <td>360</td> <td>400</td> </tr> <tr> <td>30</td> <td>490</td> <td>550</td> </tr> <tr> <td>50</td> <td>860</td> <td>950</td> </tr> <tr> <td>75</td> <td>1,260</td> <td>1,400</td> </tr> <tr> <td>100</td> <td>1,710</td> <td>1,900</td> </tr> <tr> <td rowspan="2">P.P포대</td> <td>50</td> <td>1,260</td> <td>1,400</td> </tr> <tr> <td>100</td> <td>2,520</td> <td>2,800</td> </tr> </tbody> </table> <p>비고 1. 음식물폐기물용, 제사용봉투의 용량별 봉투가격은 생활폐기물용 봉투가격과 동일</p>	구분	용량(ℓ)	봉투판매소 공급가격	소비자판매가 격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	1	45	50	3	72	80	5	90	100	10	180	200	20	360	400	30	490	550	50	860	950	75	1,260	1,400	100	1,710	1,900	P.P포대	50	1,260	1,400	100	2,520	2,800	<p>[별표 3] 규격봉투가격 (제10조제2항 관련) (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0%;">구분</th> <th rowspan="2" style="width: 5%;">용량 (L)</th> <th colspan="3">2024년</th> <th colspan="3">2025년</th> <th colspan="3">2026년</th> </tr> <tr> <th style="width: 5%;">공급 가격</th> <th style="width: 5%;">판매 수수 료</th> <th style="width: 5%;">판매 가격</th> <th style="width: 5%;">공급 가격</th> <th style="width: 5%;">판매 수수 료</th> <th style="width: 5%;">판매 가격</th> <th style="width: 5%;">공급 가격</th> <th style="width: 5%;">판매 수수 료</th> <th style="width: 5%;">판매 가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생활폐기 물용 규격봉투</td> <td>1</td> <td>54</td> <td>6</td> <td>60</td> <td>63</td> <td>7</td> <td>70</td> <td>72</td> <td>8</td> <td>80</td> </tr> <tr> <td>3</td> <td>81</td> <td>9</td> <td>90</td> <td>90</td> <td>10</td> <td>100</td> <td>100</td> <td>10</td> <td>110</td> </tr> <tr> <td>5</td> <td>99</td> <td>11</td> <td>110</td> <td>108</td> <td>12</td> <td>120</td> <td>126</td> <td>14</td> <td>140</td> </tr> <tr> <td>10</td> <td>207</td> <td>23</td> <td>230</td> <td>234</td> <td>26</td> <td>260</td> <td>252</td> <td>28</td> <td>280</td> </tr> <tr> <td>20</td> <td>396</td> <td>44</td> <td>440</td> <td>441</td> <td>49</td> <td>490</td> <td>504</td> <td>56</td> <td>560</td> </tr> <tr> <td>30</td> <td>549</td> <td>61</td> <td>610</td> <td>612</td> <td>68</td> <td>680</td> <td>675</td> <td>75</td> <td>750</td> </tr> <tr> <td>50</td> <td>945</td> <td>105</td> <td>1,050</td> <td>1,053</td> <td>117</td> <td>1,170</td> <td>1,170</td> <td>130</td> <td>1,300</td> </tr> <tr> <td>75</td> <td>1,395</td> <td>155</td> <td>1,550</td> <td>1,548</td> <td>172</td> <td>1,720</td> <td>1,719</td> <td>191</td> <td>1,910</td> </tr> <tr> <td rowspan="2">P.P포대</td> <td>50</td> <td>1,260</td> <td>140</td> <td>1,400</td> <td>1,260</td> <td>140</td> <td>1,400</td> <td>1,260</td> <td>140</td> <td>1,400</td> </tr> <tr> <td>100</td> <td>2,520</td> <td>280</td> <td>2,800</td> <td>2,520</td> <td>280</td> <td>2,800</td> <td>2,520</td> <td>280</td> <td>2,800</td> </tr> </tbody> </table> <p>비고 1. 음식물폐기물용, 제사용봉투의 용량별 봉투가격은 생활폐기물용 봉투가격과 동일</p>	구분	용량 (L)	2024년			2025년			2026년			공급 가격	판매 수수 료	판매 가격	공급 가격	판매 수수 료	판매 가격	공급 가격	판매 수수 료	판매 가격	생활폐기 물용 규격봉투	1	54	6	60	63	7	70	72	8	80	3	81	9	90	90	10	100	100	10	110	5	99	11	110	108	12	120	126	14	140	10	207	23	230	234	26	260	252	28	280	20	396	44	440	441	49	490	504	56	560	30	549	61	610	612	68	680	675	75	750	50	945	105	1,050	1,053	117	1,170	1,170	130	1,300	75	1,395	155	1,550	1,548	172	1,720	1,719	191	1,910	P.P포대	50	1,260	140	1,400	1,260	140	1,400	1,260	140	1,400	100	2,520	280	2,800	2,520	280	2,800	2,520	280	2,800
구분	용량(ℓ)	봉투판매소 공급가격	소비자판매가 격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	1	45	50																																																																																																																																																															
	3	72	80																																																																																																																																																															
	5	90	100																																																																																																																																																															
	10	180	200																																																																																																																																																															
	20	360	400																																																																																																																																																															
	30	490	550																																																																																																																																																															
	50	860	950																																																																																																																																																															
	75	1,260	1,400																																																																																																																																																															
	100	1,710	1,900																																																																																																																																																															
	P.P포대	50	1,260	1,400																																																																																																																																																														
100		2,520	2,800																																																																																																																																																															
구분	용량 (L)	2024년			2025년			2026년																																																																																																																																																										
		공급 가격	판매 수수 료	판매 가격	공급 가격	판매 수수 료	판매 가격	공급 가격	판매 수수 료	판매 가격																																																																																																																																																								
생활폐기 물용 규격봉투	1	54	6	60	63	7	70	72	8	80																																																																																																																																																								
	3	81	9	90	90	10	100	100	10	110																																																																																																																																																								
	5	99	11	110	108	12	120	126	14	140																																																																																																																																																								
	10	207	23	230	234	26	260	252	28	280																																																																																																																																																								
	20	396	44	440	441	49	490	504	56	560																																																																																																																																																								
	30	549	61	610	612	68	680	675	75	750																																																																																																																																																								
	50	945	105	1,050	1,053	117	1,170	1,170	130	1,300																																																																																																																																																								
	75	1,395	155	1,550	1,548	172	1,720	1,719	191	1,910																																																																																																																																																								
	P.P포대	50	1,260	140	1,400	1,260	140	1,400	1,260	140	1,400																																																																																																																																																							
		100	2,520	280	2,800	2,520	280	2,800	2,520	280	2,800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위임에 따라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기존 입법예고에 관하여 규정한 규칙을 개정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안 제5조)
- 나. 기존 규칙상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6조~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감사법무담당관(법무팀)
- 2) 연락처 : 전화 033-639-2806, FAX 033-639-2702
- 3) 전자문서 : shin8042@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감사법무담당관 법무팀(033-639-28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규칙 제 호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입법예고)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입법예고) ① <u>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u> 2. <u>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u> 3. <u>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u> 4. <u>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5. <u>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u> <p>② <u>입법예고 후 예고내용 중 중</u></p>	<p>제5조(입법예고) <u>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u></p>

요한 사항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내용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시 공보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입법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
2. 입법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시의 중요정책이나 시민생활에 중

<삭 제>

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인터넷이나 신문 등의 매체에 이를 예고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고 하는 경우 법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입법안에 반영할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처리결과 등을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9조(공청회) ① 시장은 자치법

규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 예고 시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속초시 애향장학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 신입생의 애향장학기금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대학 신입생의 장학생 신청자격 완화(안 제5조 3호)
- 나. 별지 제3호 서식 변경 : 공직선거법 제112조 4항 준수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교육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 반대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교육청소년팀)
- 2) 연락처 : 033-639-2049 (FAX 033-639-2059)
- 3) 전자메일 : youjini2@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 교육청소년팀 (033-639-20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규칙 제 호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전단 중 “2등급 이내”을 “3등급 이내”로, “2개 이상”를 “1개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에 “속초시장(인)”을 “속초시”로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장학생 신청자격)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 2. (생 략)</p> <p>3. 고등학교 3학년 전 과목(예체능 제외) 평균석차 <u>2등급</u> 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영역별 1등급이 <u>2개</u> 이상인 성적으로 일반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호 와 같다) 신입생 및 검정고시 평균득점 90점 이상인 일반대학교 신입생과 직전(直前)학년 성적이 평점 3.0 이상인 일반대학교 재학생. 단 휴학중인 학생은 제외한다.</p> <p>4. (생 략)</p> <p><small>[별지 제3호서식]</small> 증제 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장 학 증 서</p>	<p>제5조(장학생 신청자격)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 <u>3등급</u> <u>이내</u> ----- ----- <u>1개</u> <u>이상</u> ----- ----- ----- ----- ----- -----.</p> <p>4. (현행과 같음)</p> <p><small>[별지 제3호서식]</small> 증제 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장 학 증 서</p>

